

신탁계약 변경사항

효력발생일: 2012년 1월 25일

▶ 투자신탁명:

피델리티 아시아 하이일드 증권 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피델리티 아시아 하이일드 증권 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피델리티 월지급식 이머징 마켓 증권 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피델리티 월지급식 아시아 하이일드 증권 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 **투자신탁명:**

피델리티 아시아 하이일드 증권 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 **주요변경내용:**

- 해외위탁업무 기재 명확화
- 해외보관대리인 선정 관련 문구 추가
- 피투자펀드의 환매연기 사유 추가
- 투자대상 자산 추가 (피투자펀드가 현물환매를 실시할 경우 해당 현물 보유 목적)
- 연간갱신 등

▶ **변경내용:**

항 목	변경사유	변경 전	변경 후
제2조 (투자신탁 의 종류, 집합투자업 자 및 신탁업자)	투자신탁의 종류 기재 명확화	① 이 투자신탁은 <u>법 제 233 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모투자신탁</u> 으로서 피델리티자산운용주식회사를 집합투자업자로 하고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을 신탁업자로 한다. (이하 생략)	① 이 투자신탁은 피델리티자산운용주식회사를 집합투자업자로 하고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을 신탁업자로 한다. ② 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u>집합투자기구</u> 로 한다. 1. 이 투자신탁은 <u>법 제 229 조 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집합투자기구</u> 이다. 2. 이 투자신탁은 <u>중도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집합투자기구</u> 이다. 3. 이 투자신탁은 <u>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추가형 집합투자기구</u> 이다. 4. 이 투자신탁은 <u>법 제 233 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모투자신탁</u> 이다. (이하 생략)
제6조의 2 (외국통화 표시자산에 대한 운용업무의 위탁)	해외위탁업무 기재 명확화 - 외화자산의 운용 운용지시업무 전반이 아닌 환헤지거래의 운용 운용지시업무만 을 위탁함	① 집합투자업자는 <u>법 제 42 조와 법 시행령 제 45 조에 의거 환헷지 거래(외화표시 자산에 한함)의 운용·운용지시업무를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u> 하고,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는 <u>집합투자업자의 위탁을 인수</u> 한다. ② <u>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는 법 시행령 제 45 조 제 1 호 다목에서 정한 바에 따라 외화자산에 대하여, 운용 및 운용지시 등의 업무를 수행</u> 한다. (이하 생략)	① 집합투자업자는 <u>법 제 42 조와 법 시행령 제 45 조에 의거 환헷지 거래(외화표시 자산에 한함)의 운용·운용지시업무를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위탁을 인수</u> 한다. <u>(②항 삭제)</u> (이하 생략)

제6조의 4 (해외보관 대리인)	해외보관대리인 선정 관련 문구 추가	-	<p>(추가) <u>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u> <u>집합투자업자와 협의하여</u> <u>해외보관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u></p> <p>1. <u>투자신탁재산 중 해외</u> <u>자산의 보관 및 관리</u> <u>업무(예탁결제원에 예탁된</u> <u>자산을 제외함)</u></p> <p>2. <u>제 1 호의</u> <u>투자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u> <u>수익의 추심</u></p> <p>3. <u>제 1 호 및 제 2 호의</u> <u>업무와 관련된다고 신탁업자가</u> <u>판단하는 업무의 수행</u></p>
제10조 (신탁금의 납입)	문구 명확화	<p>② 집합투자업자는 제 9 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때에는 추가투자신탁금을 현금으로 신탁업자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투자신탁금은 추가설정하는 날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에 추가로 설정하는 수익권좌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p> <p>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투자신탁금중 추가로 설정하는 수익권좌수에 최초설정시 기준가격을 곱한 금액은 투자신탁의 원본액으로, 이익 또는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은 수익조정금으로 처리한다.</p>	<p>② 집합투자업자는 제 9 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때에는 추가투자신탁금을 현금으로 신탁업자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투자신탁금은 추가설정하는 날에 공고되는 <u>1,000 좌당</u> 기준가격에 추가로 설정하는 수익권좌수를 곱한 <u>금액을 1,000 으로 나눈</u> 금액으로 한다.</p> <p>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투자신탁금중 추가로 설정하는 수익권좌수에 최초설정시 <u>공고되는 1,000 좌당</u> 기준가격을 곱한 <u>금액을 1,000 으로 나눈</u> 금액은 투자신탁의 원본액으로, 이익 또는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은 수익조정금으로 처리한다.</p>
제19조 (수익증권 의 판매가격)	문구 명확화	<p>①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u>자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가</u>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한 영업일의(당일 포함)로부터 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으로 한다.</p>	<p>①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u>자투자신탁이</u>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한 영업일의(당일 포함)로부터 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으로 한다.</p>
제25조 (수익증권 의 환매연기)	환매연기시 통지의무는 법률에 규정된 내용으로 포괄하기 위해	<p>① 제 20 조에 따라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p>	<p>① 제 20 조에 따라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1 에</p>

<p>구체적 기재를 생략</p>	<p>같다)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u>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자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p>	<p>해당하는 사유로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삭제)</p>
<p>피투자펀드의 환매연기 및 현물환매시 당해 펀드의 환매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환매연기 사유로 추가</p>	<p>1.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p> <p>가.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p> <p>나.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p> <p>다. 전쟁, 홍수, 폭풍, 테러 또는 기타 불가항력사유가 발생하는 경우</p> <p>라.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p>	<p>1.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p> <p>가.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p> <p>나.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p> <p>다. 전쟁, 홍수, 폭풍, 테러 또는 기타 불가항력사유가 발생하는 경우</p> <p>라.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u>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가치 결정의 일시적인 중지</u>와 <u>주식의 발행, 전환, 환매의 일시적인 중지</u>가 되는 경우</p> <p>마. <u>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로부터 환매대금을 현물로 지급받은 경우</u></p>
<p>문구 명확화</p>	<p>2. 수익자의 이익 또는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p> <p>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p> <p>나.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p>	<p>2. 수익자의 이익 또는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p> <p>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u>다른</u>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p> <p>나.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u>다른</u>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p>

		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제35조 (투자대상 자산 등)	피투자펀드가 현물환매를 실시할 경우 해당 현물을 자산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투자대상자산에 추가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채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법 제 9 조 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및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 5- 30 조 제 1 호의 외화증권으로서 이러한 성질을 구비한 것 (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 2.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 5-30 조 제 1 호의 외화증권으로서 이러한 성질을 구비한 것 (이하 “수익증권등”이라 한다.) 3. 법 제 5 조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채권 실물자산 통화나 채권 실물자산 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4. 제 3 호에 상응하는 채권, 실물자산 또는 통화와 관련되는 장외파생상품 (이하 “장외파생상품”이라 한다) 5. 법 제 83 조 제 1 항 단서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하는 금전의 차입(이하 “금전의 차입”이라 한다) 6. 법 시행령 제 268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채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법 제 9 조 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및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 5-30 조 제 1 호의 외화증권으로서 이러한 성질을 구비한 것 (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 2.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 5-30 조 제 1 호의 외화증권으로서 이러한 성질을 구비한 것 (이하 “수익증권등”이라 한다.) 3. 법 제 5 조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채권 실물자산 통화나 채권 실물자산 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4. 제 3 호에 상응하는 채권, 실물자산 또는 통화와 관련되는 장외파생상품 (이하 “장외파생상품”이라 한다) 5. 법 제 83 조 제 1 항 단서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하는 금전의 차입(이하 “금전의 차입”이라 한다) 6. 법 시행령 제 268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7.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가 환매대금을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 그에 따라 지급 받은 해당 현물
제40조 (투자신탁 재산의 운용비용등)	발생가능한 비용 기재 명확화	② 제 1 항에서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② 제 1 항에서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증권 등의 매매수수료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증권 등의 매매수수료 2. 증권 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및 투자신탁과 관련한 납세신고서 작성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의 고의, 과실, 신탁계약 위반 없이 투자신탁 관련 소송에 따라 부담하는 책임을 포함) 7. 증권 등의 가격정보비용 8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증권 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및 투자신탁과 관련한 납세신고서 작성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의 고의, 과실, 신탁계약 위반 없이 투자신탁 관련 소송에 따라 부담하는 책임을 포함) 7. 증권 등의 가격정보비용 8. <u>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u> 9 <u>해외보관대리인 관련 비용</u> 10.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제40조의 2 (해외보관 대리인 관련비용)	해외보관대리인 선정시 발생가능한 비용 관련 내용 추가	-	<p><u>제 40 조 제 2 항 제 8 호에서 규정하는 "해외보관대리인 관련 비용"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건당결제비용 (transaction fee)</u> 2. <u>보관 비용 (safe- keeping fee)</u> 3. <u>기타 부수비용 (out- of-pocket expenses: physical registration, DR conversion, tax reclaim, income collection 등)</u>
제47조 (투자신탁 재산의 회계감사)	오기 정정 (자산운용보고서 는 회계감사비대상 이며 투자신탁의 재무제표 회계감사는 제 2 항에서 규정하고 있음)	<p>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u>작성과 함께 투자신탁의 외부감사를 의뢰</u>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자산운용보고서 <p>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날부터 2 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계기간의 말일 2. 투자신탁의 해지일 	<p>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u>및 부속서류를 작성</u>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자산운용보고서 <p>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날부터 2 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계기간의 말일 2. 투자신탁의 해지일

<p>제48조 (신탁계약 의 변경)</p>	<p>신탁계약 변경에 따른 게시의무를 법률에 규정된 내용으로 포괄하기 위해 구체적 기재를 생략</p>	<p>③ 제 2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탁계약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 및 동법 시행령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의 영업 점포내에 1 월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p> <p>④ 수익자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부터 1 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제 23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제 3 항 및 제 5 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⑤ 이 신탁계약에 규정된 사항 중 법령 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p>	<p>③ (삭제)</p> <p>③ 수익자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부터 1 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제 23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제 4 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이 신탁계약에 규정된 사항 중 법령 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p>
---------------------------------	--	---	---

▶ 투자신탁명:

피델리티 아시아 하이일드 증권 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 주요변경내용:

- 투자신탁의 종류 기재 명확화
- 기재 오기 정정 및 명확화
- 연간갱신 등

▶ 변경내용:

항 목	변경사유	변경 전	변경 후
제1조 (목적 등)	오기정정	② 이 투자신탁은 해외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을 법 시행령 제 94 조 제 2 항 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익자는 해외 채권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해외 채권은 다양한 경제 변수와 시장금리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② 이 투자신탁은 해외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을 법 시행령 제 94 조 제 2 항 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익자는 해외 채권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해외 채권은 다양한 경제 변수와 시장금리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제2조 (투자신탁의 종류,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	투자신탁의 종류 기재 명확화	① 이 투자신탁은 <u>법 제 233 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자투자신탁으로서</u> 피델리티자산운용주식회사를 집합투자업자로 하고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을 신탁업자로 한다. (이하생략)	① 이 투자신탁은 피델리티자산운용주식회사를 집합투자업자로 하고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을 신탁업자로 한다. (추가) ② 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1. 이 투자신탁은 <u>법 제 229 조 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집합투자기구이다.</u> 2. 이 투자신탁은 <u>중도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집합투자기구이다.</u> 3. 이 투자신탁은 <u>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추가형 집합투자기구이다.</u> 4.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인하여 <u>기준가격이 다른 수종의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투자자의 가입자격, 투자성향 등에 부합하도록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법 제 231 조의 규정에 의한</u>

			<p><u>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이다.</u></p> <p>5. 이 투자신탁은 <u>법 제 233 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자투자신탁이다</u></p> <p>6. 이 투자신탁은 복수의 <u>집합투자기구 간에 각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을 다른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법 제 232 조의 규정에 의한 전환형집합투자기구이다.</u></p> <p>(이하 생략)</p>
제10조 (신탁금의 납입)	문구 명확화	<p>② 집합투자업자는 제 9 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때에는 추가투자신탁금을 현금으로 신탁업자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투자신탁금은 추가설정하는 날에 공고되는 <u>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에 추가로 설정하는 수익권좌수를 곱한 금액으로</u> 한다.</p> <p>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투자신탁금중 추가로 설정하는 <u>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권좌수에 최초설정시 공고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곱한</u> 금액은 투자신탁의 원본액으로, 이익 또는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은 수익조정금으로 처리한다.</p>	<p>② 집합투자업자는 제 9 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때에는 추가투자신탁금을 현금으로 신탁업자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투자신탁금은 추가설정하는 날에 공고되는 <u>1,000 좌당 기준가격에 추가로 설정하는 수익권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 으로 나눈</u> 금액으로 한다.</p> <p>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투자신탁금중 추가로 설정하는 수익권좌수에 최초설정시 <u>공고되는 1,000 좌당 기준가격을 곱한 금액을 1,000 으로 나눈</u> 금액은 투자신탁의 원본액으로, 이익 또는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은 수익조정금으로 처리한다.</p>
제26조 (수익증권 의 환매연기)	환매연기시 통지의무는 법률에 규정된 내용으로 포괄하기 위해 구체적 기재를 생략	<p>① 제 21 조에 따라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로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그리고, 모두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에는 환매를 연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p>	<p>① 제 21 조에 따라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로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그리고, 모두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에는 환매를 연기하여야 한다. (삭제)</p>

		<p><u>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p>	
	<p>문구 명확화</p>	<p>2. 수익자의 이익 또는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p> <p>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채산을 매각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p> <p>나. 투자신탁채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p> <p>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p>	<p>2. 수익자의 이익 또는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p> <p>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채산을 매각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p> <p>나. 투자신탁채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p> <p>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p>
<p>제48조 (투자신탁 재산의 회계감사)</p>	<p>오기 정정 (자산운용보고서 는 회계감사비대상 이며 투자신탁의 재무제표 회계감사는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음)</p>	<p>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작성과 함께 투자신탁의 외부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p> <p>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자산운용보고서</p> <p>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날부터 2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p> <p>1. 회계기간의 말일 2. 투자신탁의 해지일</p>	<p>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p> <p>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자산운용보고서</p> <p>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날부터 2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p> <p>1. 회계기간의 말일 2. 투자신탁의 해지일</p>
<p>제49조 (신탁계약 의 변경)</p>	<p>신탁계약 변경에 따른 게시의무를 법률에 규정된 내용으로 포괄하기 위해 구체적 기재를 생략</p>	<p>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탁계약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 및 동법 시행령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의 영업 접포내에 1월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p> <p>④ 수익자가 제2항의</p>	<p>③ (삭제)</p> <p>④ 수익자가 제2항의</p>

		<p>규정에 의한 공시일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제 23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제 3 항 및 제 5 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⑤ 이 신탁계약에 규정된 사항 중 법령 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p>	<p>규정에 의한 공시일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제 23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제 4 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이 신탁계약에 규정된 사항 중 법령 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p>
--	--	--	--

▶ **투자신탁명:**

피델리티 월지급식 이머징마켓 증권 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 **주요변경내용:**

- 투자신탁의 종류 기재 명확화
- 기재 오기 정정 및 명확화
- 연간갱신 등

▶ **변경내용:**

항 목	변경사유	변경 전	변경 후
제2조 (투자신탁 의 종류, 집합투자업 자 및 신탁업자)	투자신탁의 종류 기재 명확화	<p>① 이 투자신탁은 <u>법 제 233 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자투자신탁</u>으로서 피델리티자산운용주식회사를 집합투자업자로 하고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을 신탁업자로 한다.</p> <p>(이하생략)</p>	<p>① 이 투자신탁은 피델리티자산운용주식회사를 집합투자업자로 하고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을 신탁업자로 한다.</p> <p>(추가) ② 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 투자신탁은 <u>법 제 229 조 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집합투자기구</u>이다. 2. 이 투자신탁은 <u>중도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집합투자기구</u>이다. 3. 이 투자신탁은 <u>추가로 자금 남입이 가능한 추가형 집합투자기구</u>이다. 4.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수종의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투자자의 가입자격, 투자성향 등에 부합하도록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u>법 제 231 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형 집합투자기구</u>이다. 5. 이 투자신탁은 <u>법 제 233 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자투자신탁</u>이다 6. 이 투자신탁은 복수의 집합투자기구 간에 각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을 다른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u>법 제 232 조의 규정에 의한 전환형집합투자기구</u>이다.

			(이하 생략)
제26조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환매연기시 통지의무는 법률에 규정된 내용으로 포괄하기 위해 구체적 기재를 생략	① 제 21 조에 따라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로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그리고, 모두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에는 환매를 연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u>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u> <u>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u> <u>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u> <u>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u> <u>통지하여야 한다.</u>	① 제 21 조에 따라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로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그리고, 모두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에는 환매를 연기하여야 한다. (삭제)
제48조 (투자신탁 재산의 회계감사)	오기 정정 (자산운용보고서 는 회계감사비대상 이며 투자신탁의 재무제표 회계감사는 제 2 항에서 규정하고 있음)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u>작성과 함께</u> <u>투자신탁의 외부감사를</u> <u>의뢰</u> 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자산운용보고서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날부터 2 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회계기간의 말일 2. 투자신탁의 해지일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u>및 부속서류를</u> <u>작성</u> 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자산운용보고서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날부터 2 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회계기간의 말일 2. 투자신탁의 해지일
제49조 (신탁계약 의 변경)	신탁계약 변경에 따른 게시의무를 법률에 규정된 내용으로 포괄하기 위해 구체적 기재를 생략	③ 제 2 항의 규정에 <u>불구하고 신탁계약의 단순한</u> <u>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u> <u>변경하거나 법 및 동법</u> <u>시행령 또는 금융위원회의</u> <u>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u> <u>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u> <u>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의</u> <u>영업 접포내에 1 월 이상</u> <u>게시</u> 하여야 한다. ④ 수익자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부터 1 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③ (삭제) ③ 수익자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부터 1 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p>있고, 이 경우 제 23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제 3 항 및 제 5 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⑤ 이 신탁계약에 규정된 사항 중 법령 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p>	<p>제 23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제 4 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이 신탁계약에 규정된 사항 중 법령 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p>
--	--	---	--

▶ **투자신탁명:**

피델리티 월지급식 아시아 하이일드 증권 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 **주요변경내용:**

- 투자신탁의 종류 기재 명확화
- 기재 오기 정정 및 명확화
- 연간갱신 등

▶ **변경내용:**

항 목	변경사유	변경 전	변경 후
제1조 (목적 등)	오기정정	② 이 투자신탁은 해외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을 법 시행령 제 94 조 제 2 항 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익자는 해외 채권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해외 채권은 다양한 경제 변수와 시장금리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② 이 투자신탁은 해외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u>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u> 을 법 시행령 제 94 조 제 2 항 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익자는 해외 채권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해외 채권은 다양한 경제 변수와 시장금리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제2조 (투자신탁의 종류,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	투자신탁의 종류 기재 명확화	① 이 투자신탁은 법 제 233 조의 규정에 의한 <u>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자투자신탁</u> 으로서 피델리티자산운용주식회사를 집합투자업자로 하고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을 신탁업자로 한다. (이하생략)	① 이 투자신탁은 피델리티자산운용주식회사를 집합투자업자로 하고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을 신탁업자로 한다. (추가) ② 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1. 이 투자신탁은 법 제 229 조 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u>증권집합투자기구</u> 이다. 2. 이 투자신탁은 <u>중도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집합투자기구</u> 이다. 3. 이 투자신탁은 추가로 자금 <u>납입이 가능한 추가형 집합투자기구</u> 이다. 4.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인하여 <u>기준가격이 다른 수종의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투자자의 가입자격, 투자성향 등에 부합하도록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법 제 231 조의</u>

			<p><u>규정에 의한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이다.</u></p> <p>5. 이 투자신탁은 <u>법 제 233 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자투자신탁이다</u></p> <p>6. 이 투자신탁은 <u>복수의 집합투자기구 간에 각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을 다른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법 제 232 조의 규정에 의한 전환형집합투자기구이다.</u></p> <p>(이하 생략)</p>
제10조 (신탁금의 납입)	문구 명확화	<p>② 집합투자업자는 제 9 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때에는 추가투자신탁금을 현금으로 신탁업자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투자신탁금은 추가설정하는 날에 공고되는 <u>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에 추가로 설정하는 수익권좌수를 곱한 금액으로</u> 한다.</p> <p>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투자신탁금중 추가로 설정하는 <u>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권좌수에 최초설정시 공고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곱한 금액은 투자신탁의 원본액으로, 이익 또는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은 수익조정금으로 처리한다.</u></p>	<p>② 집합투자업자는 제 9 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때에는 추가투자신탁금을 현금으로 신탁업자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투자신탁금은 추가설정하는 날에 공고되는 <u>1,000 좌당 기준가격에 추가로 설정하는 수익권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 으로 나눈</u> 금액으로 한다.</p> <p>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투자신탁금중 추가로 설정하는 수익권좌수에 <u>최초설정시 공고되는 1,000 좌당 기준가격을 곱한 금액을 1,000 으로 나눈</u> 금액은 투자신탁의 원본액으로, 이익 또는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은 수익조정금으로 처리한다.</p>
제26조 (수익증권 의 환매연기)	환매연기시 통지의무는 법률에 규정된 내용으로 포괄하기 위해 구체적 기재를 생략	<p>① 제 21 조에 따라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로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그리고, 모두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에는 환매를 연기하여야</p>	<p>① 제 21 조에 따라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로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그리고, 모두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에는 환매를 연기하여야 한다. (삭제)</p>

		<p>한다. 이 경우 <u>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p>	
	문구 명확화	<p>2. 수익자의 이익 또는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p> <p>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채산을 매각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p> <p>나. 투자신탁채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p> <p>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p>	<p>2. 수익자의 이익 또는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p> <p>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채산을 매각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p> <p>나. 투자신탁채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p> <p>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p>
제48조 (투자신탁 재산의 회계감사)	<p>오기 정정 (자산운용보고서 는 회계감사비대상 이며 투자신탁의 재무제표 회계감사는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음)</p>	<p>① <u>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작성과 함께 투자신탁의 외부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u></p> <p>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자산운용보고서</p> <p>② <u>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날부터 2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u></p> <p>1. 회계기간의 말일 2. 투자신탁의 해지일</p>	<p>① <u>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u></p> <p>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자산운용보고서</p> <p>② <u>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날부터 2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u></p> <p>1. 회계기간의 말일 2. 투자신탁의 해지일</p>
제49조 (신탁계약 의 변경)	<p>신탁계약 변경에 따른 게시의무를 법률에 규정된 내용으로 포괄하기 위해 구체적 기재를 생략</p>	<p>③ <u>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탁계약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 및 동법 시행령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u>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의 영업 접포내에 1월 이상 게시</u>하여야 한다.</u></p>	<p>③ (삭제)</p>

		<p>④ 수익자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부터 1 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제 23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제 3 항 및 제 5 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⑤ 이 신탁계약에 규정된 사항 중 법령 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p>	<p>⑤ 수익자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부터 1 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제 23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제 4 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이 신탁계약에 규정된 사항 중 법령 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p>
--	--	---	---